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47호
----------	-------

2016. 3. 15.(화)
정책복지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임병운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2월 24일
- 회부일자 : 2016년 2월 24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3월 4일

-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여, 민·관 거버넌스 차원의 운영 효과성을 도모하고,
- 해당 법률의 개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띄어쓰기 등에 따른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함.

나.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6조의2 제1항)
 - 자문역할 → 자문 및 심의 역할
-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증원 (안 제6조의2 제2항)
 - 10명 이내 → 15명 이내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용 (안 제6조의2 제4항)
 - 여성위원비율 30%이상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함.
- 본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 운영의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 진흥원은 기존에 2개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해 오던 중, 2014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올 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성상담(이동형) 업무를 추가 수행하게 되는 등 담당 기능 및 직무가 확대된 바, 운영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촉직 위원을 기존 7명 이내에서 5명 증원한 12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 ※ 현행 : 위촉직 위원 7명(당연직 3명) ⇒ 개정 후 : 위촉직 위원 12명(당연직 3명)
 - 위촉직 위원의 증원은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추가된 기능 및 업무에 부합한 전문가 및 현장 인사 확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안제6조의2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 기존 ‘여성위원비율 30%이상 되도록 노력’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 으로 개정하고,
 - 동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에 따라 본 개정안 부칙에 안제6조의2제4항에 대해 2017. 12.3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적용 특례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법령 위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적 측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문역할” 을 “자문 및 심의 역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 을 “15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0% 이
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저명인사” 를 “인사”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3조제1호 단서 중 “전일” 을 “전날”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하는” 을 “할” 로 한다.

제20조 중 “해당연도” 를 “해당 연도”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복지지원법</u>」 제29조와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복지지원법</u>」 제29조와 「<u>청소년활동진흥법</u>」 ----- ----- ----- ----- -----.</p>
<p>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은 「<u>청소년복지지원법</u>」 과 「<u>청소년활동진흥법</u>」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u>청소년복지지원법</u>」 등“ 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u>청소년활동진흥법</u>」 ----- ----- ----- ----- -----.</p>
<p>제4조(기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u>」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2.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3. 4. (생략) 	<p>제4조(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u>」 ----- 2. 「<u>청소년활동진흥법</u>」 ----- 3.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진흥원 운영의 <u>자문역할</u>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 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u>운영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 (생 략)</p> <p>2. 청소년 시설·단체·기관의 장 및 지역 <u>저명인사</u></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⑥ ~ ⑨ (생 략)</p>	<p>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 --- <u>자문 및 심의 역할</u>----- ----- ----- -----.</p> <p>② ----- ----- <u>15명</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특정</u> <u>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인사</u></p> <p>⑤ ----- ----- <u>한정하여</u> ----- ---. -----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임용)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8조(임용) ① ----- ----- ----- ----- --- <u>한정하여</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보수) 진흥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보수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u>그 전일</u>에 지급한다.</p> <p>2. 보수지급 기준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상근 원장에 <u>대하여</u>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보수) ----- -----.</p> <p>1. ----- ----- ----- <u>전날</u> ----- -----.</p> <p>2. ----- ----- ----- ----- ----- <u>대해</u> ----- ----- -----.</p>

현행	개정안
<p>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③ (생략)</p>	<p>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 ----- ----- ----- ----- ----- 할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업실적) 원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u>해당연도</u> 사업실적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업실적) ----- ----- <u>해당 연도</u> ----- -----.</p>

관계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